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9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 홍 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되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공공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1인 소유면적·지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3. 종교시설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 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시송달) 부과대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인한 부과지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국제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4조제2항중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를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환경오염방지금”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제57차 행정쇄신위원회(1994. 9. 16)에서 의결·확정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근거로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과대상시설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1,000㎡ 이상 시설물에서 160㎡ 이상 시설물로 함 (영 제4조제1항).

나.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화

경보전지역(농림지역은 제외)으로 확대함(영 제4조제4항).

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고,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로 함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

라. 부담금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면제대상을 크게 축소하되 현행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97년까지만 잠정적으로 경감하도록 함(영 제6조 내지 제7조 및 부칙).

마.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함(영 별표 6의2).